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별지 제33호서식]

(전화) 02)776-6926,777-6926  
(팩스) 02)779-6926

등부 2016년 제 5440 호

인 증 서

주식회사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일 시: 2016년 7월 21일 오후 6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본점회의실

주 주 총 수	:	2명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출석 주주 수	:	2명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	:	100,000주

의장인 대표이사 박충구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영업인가 후 이행 사항에 의거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서면 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 다음 -

- 적용시기 : 주주총회 승인일
- 변경내용 : [별첨 1]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제2호 의안: 주택 건설 사업자 신청의 건

의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진행을 위해 본 리츠가 주택 건설 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서면 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 제3호 의안: 임대사업자 신청의 건

의장은 본 리츠가 준공이후 보유한 자산을 통해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또한 취득할 자산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서면 의결권을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후 6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16년 7월 21일

주식회사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대표이사      박 충 구



[별첨 1]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p><b>제2조(목적)</b></p> <p>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 2. (생략)  <u>&lt;신설&gt;</u>  3~ 8. (생략)</p>	<p><b>제2조(목적)</b></p> <p>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 2. (현행과 같음)  <u>2의2. 주택건설사업</u>  4. ~ 8. (현행과 같음)</p>	주택건설 사업 목적 추가
3	<p><b>제 9 조의 2(종류주식의 내용)</b></p> <p>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배당한다.</p> <p>3. 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2.0%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주식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1기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청약금 납부일 익일부터 당해 영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p> <p>③ 회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b>제 9 조의 2(종류주식의 내용)</b></p> <p>④ 회사는 매 결산기에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배당한다.</p> <p>3. 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u>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u>)의 연 2.0%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⑤ 주식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1기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해당 주식의 청약금 납부일 익일부터 당해 영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p> <p>⑥ 회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p>	종류주식 내용 변경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4	<p><b>제 10 조 (잔여재산의 분배)</b></p> <p>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p> <p>3. (생략)</p> <p>4. 남은 기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p>	<p><b>제 10 조(잔여재산의 분배)</b></p> <p>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u>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u></p>	기타의 의미 명확화
5	<p><b>제14조 (주식의 공모)</b></p> <p>회사는 법상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및 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4조 (주식의 공모)</b></p> <p>회사는 법상 영업인가를 받은 날(회사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p> <p>3.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p> <p>4. 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p>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 사항 반영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 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 <del>는 경우 임대주택을 말한다)으</del> 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 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 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p>	
6	<p>제19조 (주식의 명의개서)</p> <p>④ (생략)</p> <p>⑤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3.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권</p> <p>4. 상속, 유증 또는 재판의 집행 및 회사의 합병 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p> <p>⑥ (생략)</p>	<p>제19조 (주식의 명의개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3.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권(<u>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u>)</p> <p>4. 상속, 유증 또는 재판의 집행 및 회사의 합병 기타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u>주권이 발행된 경우</u>)</p> <p>⑥ (현행과 같음)</p>	<p>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시 첨부 서류 명확화</p>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7	<p>제21조 (현물출자)</p> <p>④ (생략)</p> <p>⑤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2. ~ 3. (생략)</p> <p>⑥ (생략)</p>	<p>제21조 (현물출자)</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del>제4호에</de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6. <u>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u></p> <p>7.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p> <p>⑥ (현행과 같음)</p>	<p>현물출자가 가능한 재산유형 추가</p>
8	<p>제30조 (주주총회 의결사항)</p> <p>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해 채택된다.</p> <p>2. ~ 2. (생략)</p> <p>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p> <p>6. ~ 8.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p> <p>2. ~ 8. (생략)</p> <p>10. ~ 18. (생략)</p>	<p>제30조 (주주총회 의결사항)</p> <p>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해 채택된다.</p> <p>2. ~ 2. (현행과 같음)</p> <p>5. <u>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다만,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u>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p> <p>다. <u>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 등 (취득대상 부동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계약 및 인허가 신청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u></p> <p>라.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p>	<p>주총결의 사항 명확화 및 추가</p>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u>공급, 마케팅, 임대운영 · 관리 및 주거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계약</u></p> <p>6. <u>(현행과 같음)</u></p> <p>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p> <p>2. ~ 8. (현행과 같음)</p> <p><u>8의2.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 · 대상 · 범위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u>8의3.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u></p> <p>9~18. (현행과 같음)</p>	
9	<p><b>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b>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p>	<p><b>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b>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u>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u> 본점에 비치한다.</p>	기명날인권자 또는 서명권자 명확화
10	<p><b>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수)</b> ③ 회사의 이사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p> <p>④ ~ ③ (생략)</p>	<p><b>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수)</b> ③ 회사의 이사의 수는 <u>3명</u> 이상으로 한다. 단,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u>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u></p> <p>④ ~ ③ (현행과 같음)</p>	소규모회사의 입원 수 내용 반영
11	<p><b>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b> ② ~ ② 생략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에 다른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p><b>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b> ② ~ ②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에 <u>따른</u>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오타 수정
12	<p><b>제44조 (이사회의 결의사항)</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p><b>제44조 (이사회의 결의사항)</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p>	이사회 결의 사항 추가 및 삭제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2. ~ 2. (생략)</p> <p>4. ~ 4. (생략)</p> <p>9.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p> <p>10.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11. 판매회사와의 주식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12. ~ 12. (생략)</p> <p>15. 주식의 이익소각</p> <p>16. ~ 15. (생략)</p>	<p>2. ~ 2. (현행과 같음)</p> <p>2의2. 사업계획에서 정한 임대차 조건 범위 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p> <p>3 ~ 4. (현행과 같음)</p> <p>5. <del>&lt;삭제&gt;</del></p> <p>9.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변경, <u>해지</u>에 관한 사항</p> <p>10. 판매회사와의 주식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u>해지</u>에 관한 사항</p> <p>11.~ 12. (현행과 같음)</p> <p>13. &lt;삭제&gt;</p> <p>14. ~ 15. (현행과 같음)</p>	
13	<p><b>제4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b></p> <p>② ~ ② (생략)</p> <p>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b>제4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b></p> <p>③ ~ ② (현행과 같음)</p> <p>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u>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u>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음성만 송·수신하 는 원격통신수 단에 의한 결의 참가 허용</p>
14	<p><b>제4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b></p> <p>③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p> <p>④ ~ ③ (생략)</p>	<p><b>제4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b></p> <p>②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u>매 사업연도 별로</u>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 <del>가</del> 결정한다.</p> <p>④ ~ ③ (현행과 같음)</p>	<p>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사업연도 별로 정하도록 함</p>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5	<p>제49조 (자산운용의 제한사항 및 투자비율 등)</p> <p>⑤ (생략)</p> <p>⑥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p> <p>⑦ 회사가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생략)</p> <p>나. ~ 마. (생략)</p> <p>차.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p>카. (생략)</p> <p>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해당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회사의 이사회</p>	<p>제49조 (자산운용의 제한사항 및 투자비율 등)</p> <p>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⑥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5.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다.</p> <p>6. 제1호의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을 말한다.</p> <p>7. 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p> <p>8. 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p>	<p>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및 증권투자 시 준수 내용 변경,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 사항 반영</p>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개최일 전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다)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p> <p>파. ~ 카.(생략)</p> <p>4. ~ 4. (생략)</p> <p>(8) (생략)</p>	<p>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회사가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나. ~ 라.(현행과 같음)</p> <p>라의2.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p>마. (현행과 같음)</p> <p>차.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p>카. (현행과 같음)</p>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 <del>(부동산으로)</del>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p> <p>파. ~ 카.(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항 제1호 라의2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8.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16	<p>제50조 (업무의 위탁)</p> <p>④ (생략)</p> <p>⑤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할 자산의 투자, 운용률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며 업무의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p> <p>2. ~ 8. (생략)</p>	<p>제50조 (업무의 위탁)</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할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p> <p>2. ~ 8. (현행과 같음)</p>	문구 수정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⑥ ~ ⑥ (생략)</p> <p><b>제52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b></p> <p>② ~ ② (생략)</p> <p>⑥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자금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사가 설립된 후 1분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전날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자 기자본으로 산정한다.</p> <p>⑧ (생략)</p>	<p>⑥ ~ ⑥ (현행과 같음)</p> <p><b>제52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b></p> <p>② ~ ② (현행과 같음)</p> <p>③ &lt;삭제&gt;</p> <p>④ &lt;삭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17	<p><b>제62조 (해산 등)</b></p> <p>③ (생략)</p> <p>④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 3. (생략)</p>	<p><b>제62조 (해산 등)</b></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법 시행령 <u>제4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인가받은</u></p>	<p>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 사항 반영</p>
18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u>사항의 변경이 경매·공매 등</u> <u>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u> <u>발생하는 경우는 제외)</u>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  
[별지 제37호서식]

#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전화) 02)776-6926, 777-6926  
(팩스) 02)779-6926

등부 2016 년

제 5440호

## 인 증

위 주식회사 대한제5호뉴스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16년 07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동 정미영

들의 대리인 정미숙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6년 07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아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진술서, 확인서 4. 주주명부 5. 등기사항증명서 6. 정부증명서